

# 2022 연말정산 안내문

2022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께서는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P 입력 기간: 2023. 1. 13.(금)~2023. 1. 20.(금)
- 공제서류 제출 기한: 2023. 1. 20.(금) ※ 우편 제출 시 도착 일자 기준
- 제출 서류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공제서류, 기타 공제서류(기부금영수증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또는 부서)별 수합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2023. 1. 15.(일) ~

영남대학교는 2022년 소득이 있는 교직원에게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득이 신고가 누락되거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께서는 본인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추후 세액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해당기간 내 연말정산이 어려우신 경우 2023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환급(또는 환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매년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기타 과다 공제(기부금, 주택대출 등)이 발견되어 추가세액 및 가산세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확인 및 유의사항>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인해 기부금명세서상의 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작성 ·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것.
- 일괄반영 근로소득: 교직원 본인 또는 직계자녀에 대한 복지장학금, 장기근속 또는 퇴임메달, 건강검진비 지원금, 교직원(가족포함) 진료비감액분, 교직원 식대지원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 진료비 감액분 확인 사이트 <https://yumc.ac.kr:8443/prtreq/login.jsp>
- 일괄반영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 등

전산입력 및 서류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세법개정 및 연말정산 관련 변경정보는 지속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1.

재 무 처 장

I. 공제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안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p>●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b>1인당 150만원을 공제</b></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제대상자</th> <th colspan="3">기본공제요건</th> </tr> <tr> <th>생계요건</th> <th>나이요건<sup>주1)</sup></th> <th>소득금액요건</th> </tr> </thead> <tbody> <tr> <td>본인</td> <td rowspan="2">-</td> <td>-</td> <td rowspan="6">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td> </tr> <tr> <td>배우자</td> <td>-</td> </tr> <tr> <td>직계비속·입양자</td> <td rowspan="2">주민등록표상의 동거<sup>주2)</sup></td> <td>만 20세 이하</td> </tr> <tr> <td>직계존속</td> <td>만 60세 이상</td> </tr> <tr> <td>형제자매</td> <td>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td> </tr> <tr> <td>기조수급자</td> <td>-</td> </tr> <tr> <td>위탁아동</td> <td>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td> </tr> </tbody> </table> <p><sup>주1</sup>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만 20세이하 : 2002.01.01.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 1962.12.31. 이전 출생자</p> <p><sup>주2</sup> 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되거나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p>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sup>주1)</sup>	소득금액요건	본인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sup>주2)</sup>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조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
	공제대상자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sup>주1)</sup>	소득금액요건																									
본인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sup>주2)</sup>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조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																											
추가공제	<p>●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가공제</th> <th>공제금액</th> <th>공제대상</th> </tr> </thead> <tbody> <tr> <td>경로우대자</td> <td>1명당 100만원</td> <td>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td> </tr> <tr> <td>장애인</td> <td>1명당 200만원</td> <td>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td> </tr> <tr> <td>부녀자</td> <td>연 50만원</td> <td>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td> </tr> <tr> <td>한부모가족<sup>주1)</sup></td> <td>연 100만원</td> <td>·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p><sup>주1</sup>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p>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sup>주1)</sup>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sup>주1)</sup>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 택 자 금 공 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p>● <b>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b>인 근로자 본인이 <b>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b>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한도 400만원)를 소득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금융기관 차입금</td> <td>·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td> <td>·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td> </tr> <tr> <td>개인간 차입금</td> <td>·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이상으로 차입</td> <td>·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td> </tr> </tbody> </table> <p>* 외국인 경우 전입일이란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등록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신고일을 말함.</p>			구분	공제요건	제출서류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이상으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구분	공제요건	제출서류																									
금융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이상으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p>●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14~18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13.12.31 이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입금 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td> <td>·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td> </tr> </tbody> </table> <p>*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함에 유의.</p>			차입금 요건	제출서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입금 요건	제출서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공통주택가격확인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 자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입시기</th> <th>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2015.01.01 이후 차 입한 차입금</td> <td>15년 이상</td> <td>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td> <td>연 1,800만원 연 1,500만원 연 500만원</td> </tr> <tr> <td rowspan="2">10년 이상</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td> <td>연 3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td> <td>연 1,500만원</td> </tr> <tr> <td colspan="2">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td> <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td> <td>연 500만원</td> </tr> <tr> <td colspan="2" rowspan="3">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td> <td>10년 이상 15년 미만( '03.12.31이전 차입금)</td> <td>연 600만원</td> </tr> <tr> <td>15년 이상 30년 미만</td> <td>연 1,000만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연 1,500만원</td> </tr> </tbody> </table>	차입시기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금액	2015.01.01 이후 차 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1,800만원 연 1,500만원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 '03.12.31이전 차입금)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차입시기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금액																																														
2015.01.01 이후 차 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1,800만원 연 1,500만원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 '03.12.31이전 차입금)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개인연금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공제</li> </ul>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란우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연 200만원~500만원 한도)을 공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자</th> <th>공제한도*</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 - '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만</td> <td>200만원 ~ 500만원</td> <td>공제부금납입증명서</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 - '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만	200만원 ~ 500만원	공제부금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li> </ul>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제출서류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5.12.31. 이전 가입한 임직원 - '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만	200만원 ~ 500만원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공제한도 : 연 300만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마련저축</th> <th>공제요건</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td> <td>·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td> <td>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td> </tr> </tbody> </table>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제출서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주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기준으로 판단함.</li> </ul>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제출서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주에도 소득공제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공제금액</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벤처·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td> <td>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td> <td rowspan="2">·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td> </tr> <tr> <td>벤처기업 등에 투자</td> <td>투자금액의 30% ~ 100%</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벤처·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30% ~ 100%																																							
공제대상	공제금액	제출서류																																														
벤처·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30% ~ 1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li> <li>※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불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공제금액 (①+②)</th> <th rowspan="2">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직불카드·현금영수증</td> <td>도서공연 등</td> <td>전통시장</td> <td colspan="2">대중교통</td> <td>소비증가분</td> </tr> <tr> <td>15%</td> <td>30%</td> <td>30%</td> <td>40%</td> <td>1-6월</td> <td>7-12월</td> <td>20%</td> </tr> </tbody> </table> <p>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용카드</th> <th>직불카드·현금영수증</th> <th>도서공연 등</th> <th>전통시장</th> <th>대중교통</th> <th>소비증가분</th> </tr> </thead> <tbody> <tr> <td>15%</td> <td>30%</td> <td>30%</td> <td>40%</td> <td>40%</td> <td>80%</td> </tr> <tr> <td>20%</td> <td>30%</td> <td>30%</td> <td>40%</td> <td>40%</td> <td>80%</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비 등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소비증가분이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5%)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 105%)</p> <p>㉡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 ~ 1억2천만원</th> <th>1억2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p>	공제금액 (①+②)							제출서류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5%	30%	30%	40%	1-6월	7-12월	20%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5%	30%	30%	40%	40%	80%	20%	30%	30%	40%	40%	80%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50만원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등
공제금액 (①+②)							제출서류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5%	30%	30%	40%	1-6월	7-12월	20%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15%	30%	30%	40%	40%	80%																																											
20%	30%	30%	40%	40%	80%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50만원	200만원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연 1,500만원) 한도)을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2015.12.31. 까지 가입한 근로자(해당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2023.12.31. 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인 근로자(해당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정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적용. * 20.01.01 이후 최초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 면세.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70%;">세액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공제대상 자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li> <li>•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2명)×30만원</li> </ul> </td> </tr> <tr> <td>· 출산·입양자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에 출산·입양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li> <li>-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li> </ul> </td> </tr> </tbody> </table> <p>*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5.12.31. 이전 출생자임.</p>	구 분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li> <li>•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2명)×30만원</li> </ul>	· 출산·입양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에 출산·입양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li> <li>-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li> </ul>											
구 분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li> <li>•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2명)×30만원</li> </ul>																	
· 출산·입양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에 출산·입양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li> <li>-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li> </ul>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에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① 일반 공제금액 + ② ISA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금액</li> <li>① 일반 공제금액 = Min(① + ②, 공제한도(연 700만원, 9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600만원 또는 300만원))</li> <li>㉡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DC·IRP), 과학기술인공제) 납입한 본인부담금</li> </ul> </li> <li>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공제 = Min(전환금액×10%, 연 300만원)</li> </ul> <p>* 연령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요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th> <th colspan="2">연금저축 공제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통합한도)와 ISA전환금액 추가공제한도</th> <th rowspan="2">세액공제율</th> </tr> <tr> <th>만 50세 미만자</th> <th>만 50세 이상자</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td> <td>연 4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td> <td>연 600만원(통합한도 9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td> <td>+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td> <td>+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td> </tr> <tr> <td>1억 2천만원 초과</td> <td colspan="2">연 3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연금저축 공제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통합한도)와 ISA전환금액 추가공제한도		세액공제율	만 50세 미만자	만 50세 이상자	5,500만원 이하	연 4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	연 600만원(통합한도 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연 3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12%
총급여액	연금저축 공제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통합한도)와 ISA전환금액 추가공제한도		세액공제율															
	만 50세 미만자	만 50세 이상자																
5,500만원 이하	연 4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	연 600만원(통합한도 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연 300만원(통합한도 700만원) + Min(ISA전환금액×10%, 300만원)		12%															
보험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55%;">공제대상</th> <th style="width: 30%;">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보장성보험</td> <td>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td> <td>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td> </tr> <tr> <td>장애인전용보험</td> <td>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td> <td>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15%(연 100만원 한도)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의료비세액공제	<p>●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없음)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b>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공제대상 의료비</th> <th style="width: 15%;">공제한도</th> <th style="width: 25%;">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난임시술비</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li> <li>·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ul> </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한도없음</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b>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b>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td> </tr> <tr> <td>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td> </tr> <tr> <td>③ 본인·만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td> </tr> <tr> <td>④ 그 밖의 부양가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 만 65세 이상자는 1957.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재등록된자를 말함.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b>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① + ② + ③ Min{ ④ - (총급여액×3%+실손의료보험금), 연 700만원 }</b></p>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li> <li>·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ul>	한도없음	<b>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b>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③ 본인·만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④ 그 밖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연 700만원																	
	구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li> <li>·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ul>	한도없음	<b>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b>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③ 본인·만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④ 그 밖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연 700만원																																
교육비세액공제	<p>●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공제대상자</th> <th style="width: 45%;">공제대상 교육비</th> <th style="width: 15%;">공제한도</th> <th style="width: 25%;">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일반교육비</td> <td>취학전 아동</td> <td>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명당 300만원</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td> </tr> <tr> <td>초·중·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li> <li>-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li> <li>-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li> </ul> </td> </tr> <tr> <td>대학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li> <li>·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명당 900만원</td> </tr> <tr> <td></td> <td>근로자 본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li> <li>·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li> <li>·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sup>주1)</sup></li> </u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한도 없음</td> <td></td> </tr> <tr> <td></td> <td>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td> <td>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주1)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b>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신청할 것.</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학자금 대출시기</th> <th style="width: 70%;">교육비 공제신청 가능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반교육비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li> <li>-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li> <li>-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li> </ul>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li> <li>·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li> </ul>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li> <li>·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li> <li>·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sup>주1)</sup></li> </ul>	한도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시기	교육비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일반교육비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li> <li>-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교재비</li> <li>- 중·고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li> </ul>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li> <li>·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li> </ul>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li> <li>·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li> <li>· 학자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sup>주1)</sup></li> </ul>	한도 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시기	교육비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기부금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li> </ul>			
	구 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15%(25%*) ※ 3천만원 초과분 :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 × 20%(35%*)	
③ ③ 지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③]×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 '22년 지출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li> <li>• '19년 ~ '20년 지출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li> <li>• '16년 ~ '18년 지출 기부금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li> <li>• '14년 ~ '15년 지출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li> </ul>	
	종교단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li> <li>-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li> <li>·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li> <li>- 소득금액*×30%</li> <li>※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li> </ul>		
	종교단체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li> </ul>			
	공제요건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li> </ul>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말한다.				

##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방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양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다. 단,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 →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아래의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

아래의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이 조회하여, 「한번에 내려받기」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연말정산간소화' (Simplified Final Tax Settlement) portal. The main section is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Income and Tax Credit Data Search). It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and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filters for '귀속년도' (2022) and '전체활래제' (All active). A grid of buttons allows selecting months from 1월 to 12월, with '한번에 내려받기' (Download all) highlighted. A table lists various categories and their amounts: 건강보험 (3,573,980), 국민연금 (2,772,900), 보험료 (7,523,842), 의료비 (1,531,700), 교육비 (0), 신용카드 (17,628,420), 직불카드 등 (16,377,887), 현금영수증 (2,176,259),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상공인금 (0), and 기부금 (861,800). A modal window titled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is open, providing instructions on how to download PDF files and a list of items to be downloaded. The modal includes a '내려받기' (Download) button.

### 3.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안내

2022년도 중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박스와 같이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월의 체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예시 : 2022년 7월 1일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The screenshot shows the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Income and Tax Credit Data Search) pag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and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Below this, the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section is active, with a date filter set to '2022년' and '전체월선택'. A date selection menu is open, showing months from 1월 to 12월, with 7월 through 12월 selected. The main area contains a grid of expense categories with their respective amounts: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688,50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2,772,900	보험료 (Insurance): 2,317,344	의료비 (Medical Expenses): 1,144,10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0	신용카드 (Credit Card): 9,567,778	직불카드 등 (Debit Card): 9,202,004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830,223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rsonal Pension Savings/Pension Savings): 0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Monthly rent): 0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Long-term Investment Savings/Venture Investment Trust):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0	기부금 (Donation): 861,800

Below the grid, there is a note: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There are also buttons for 'PDF다운로드' and '인쇄하기/전자첨자 내려받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현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

#### 4.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 없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방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현황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미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